



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 운영 수칙

1. 개요

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(이하 “생활관”이라 한다)은 팀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사랑과 겸손과 봉사를 배우고 실천하는 기독교 인성 교육의 장이다.

2. 목표

- 가. 사랑을 나누는 이타 중심의 공동체 생활
- 나. 겸손을 생활화 하는 인격 성숙의 공동체 생활
- 다. 봉사를 실천하는 섬김 중심의 공동체 생활

3. 운영방침

- 가.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습득한다.
- 나. 서로 돌아보아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한다.
- 다. 신앙과 삶이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훈련한다.

4. 생활관 조직 및 기능

- 가. 생활관 운영위원회 :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. 생활관 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생활관장,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, 자치회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나. 생활관장 : 입주 학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다. 생활관 운영팀 : 생활관에 입주한 학생들의 입주 및 퇴거, 재정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사무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- 라. 생활관 간사 : 공동생활 안내 및 지도, 학생 상담, 신앙 지도, 생활관 행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.
- 마. 자치회 : 생활관 학생 대표 기구로서 매일 23:00에 인원점검 실시, 수칙집행 및 입주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공동생활을 지원한다.
- 바. RC집행부 : RC 내 학생 대표 기구로서 대표단과 동장단으로 구성되며, RC 내 학생들의 복지 및 문화 사업 등을 담당한다.
- 사. RC협력회 : 각 RC 대표 및 부대표로 이루어지며, RC 학생회간의 협력을 담당한다.
- 아. 생활관 실무위원회 : 간사 2인, 자치회 임원 2인, 학생생활관 운영팀 직원 1인 이내로 구성하고, 별점 이의 신청, 호실 변경 신청, 동별 특색에 맞는 별점 항목 제정 등을 심의한다.



제 1 조 (명칭)

본 수칙은 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 운영 수칙이라 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 수칙은 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입주)

- ① 입주는 신입생 및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으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활관 납부금을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② 입주자는 상점이 있는 경우 우선 입주 대상자가 된다. 단, 벌점의 합계가 6점 이상인 경우 우선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③ 입주자는 벌점의 합계가 10점 이상인 경우 다음 등록학기 입주자격을 상실하고, 벌점제도 표에 나와 있는 단일 항목 퇴거자는 방학을 포함한 다음 등록학기 입주자격을 상실한다. 이 경우 휴학 및 교환학생 기간은 등록학기로 인정하지 않는다.
- ④ 입주자의 선발은 별도의 선발원칙과 기준에 따른다. 이 경우 학생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
- ⑤ 생활관장은 공동체 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를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⑥ 학부 및 대학원 수료생은 생활관에 입주 할 수 없다.
- ⑦ 생활관에 무단 숙박자는 다음 학기 생활관 입주에 불이익을 받는다.

제 5 조 (퇴거)

- ① 퇴거를 원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거를 할 수 있으며, 개인의 모든 짐을 반출하여야 퇴거로 인정한다.
- ② 생활관은 벌점 중 퇴거 항목 또는 벌점의 합계가 10점 이상인 자를 강제퇴거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생활관장은 정신질환, 전염병 등으로 인해 공동체 생활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다.
- ④ 휴학, 자퇴, 제적된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거하여야 한다. 단, 휴학 시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입주가 제한된다.
- ⑤ 학기 중 퇴거 통지를 받은 자는 퇴거 통지 후 7일 이내에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한 경우 생활관장의 허가를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⑥ 학기가 종료되면 모든 학생은 퇴거를 원칙으로 한다.
- ⑦ 생활관 입주권을 양도, 양수한 경우 강제퇴거 되며 다음 학기 입주를 제한한다.

제 6 조 (방학 중 입주 및 퇴거)

- ① 방학 중 입주는 별도의 선발원칙과 기준을 따른다.
- ② 입주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숙박할 경우, 방학을 포함한 다음 등록학기 입주자격을 상실한다. 단, 휴학 및 교환학생 기간은 등록학기로 인정하지 않는다.
- ③ 방학 중 수칙 위반 내용은 학기 중과 동일하다. 단, 방학 중 부과된 벌점은 방학기간 내에 한하며, 벌점으로 인한 강제퇴거의 기준은 8점으로 한다.
- ④ 퇴거에 관한 모든 절차는 학기 중과 동일하다. 단, 강제퇴거 대상자는 퇴거 통지 후 3일 이내에 퇴거함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경우 생활관장의 허가를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강제퇴거 처분에 불응하는 자는 다음학기 생활관 입주를 제한한다.

제 7 조 (방문객의 숙박)

- ① 방문객은 생활관 입주생 외 생활관을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을 칭한다.
- ② 방문객은 생활관에 숙박할 경우 입주자 생활 수칙을 동일하게 지킬 의무가 있으며 생활관에서 정한 시간 내에 퇴실해야 한다. 방문객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퇴거 될 수 있다.
- ③ 평일(월~금) 방문객은 23:00까지 각 호관 야간행정실, 주말(토~일)에는 벨엘관 야간행정실에 '일일 숙박신청서'를 반드시 제출하고, 생활관장이 책정한 숙박비를 지불하여야 한다.
- ④ 일일 숙박은 1회 신청 시, 최대 3박 4일로 제한하고, 퇴거 당일에 다시 숙박 신청을 할 수 없다.

제 8 조 (생활관 폐관 기간)

생활관 운영위원회는 심의에 따라 설, 추석, 방학 중 시설수리기간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폐관이 필요한 경우 생활관을 폐관할 수 있으며 폐관기간 중에는 퇴거를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폐관 기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호실 배정)

호실 배정은 생활관장이 승인한다. 단, 호실 배정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생활관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할 수 있다.

제 10 조 (게시물)

- ① 게시물은 자치회에 게시를 신청한 후, 확인 도장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허가된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다.
- ② 신청자는 해당학기 자치회원에 한한다. 단, 외부인이 게시를 원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자치회에 신청할 수 있다.



제 11 조 (관내 방송)

- ① 관내 전체 방송은 사전에 자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자치회는 문서 사본을 뽕엘관 야간 행정실에 전달하며 23:30 이전에 방송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2 조 (시설)

- ① 각 호실의 기물이나 제반 시설 중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히즈넷 원클릭 민원서비스의 시설관리부서로 수리를 요구한다.
- ② 생활관 내의 모든 공공시설은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할 수 없다.

제 13 조 (생활관 출입 통제)

- ① 운영팀, 야간행정실, 세탁소, 자치회실, 보건실 및 남녀 공동사용 공간을 제외한 남녀가 각각 거주하는 층은 상호 방문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시설 수리 등으로 이성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내방송 2회 후 출입을 할 수 있다.(안내방송은 방문목적, 인원, 소요시간을 안내하고, 시설수리 종료 후 종료방송을 한다.)
- ②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 내에는 23:00 이후에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다.

제 14 조 (관리)

- ① 생활관 내 상행위는 입주자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자치회가 검토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득해 할 수 있다.
- ② 23:00시 이후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에게 알리고 간사는 이를 확인하여 조치한다.

제 15 조 (수칙의 개정)

- ① 수칙개정은 입주생들의 의견 수렴 후 간사회와 자치회가 협의하여 개정안을 발의한다.
- ② 발의된 개정안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되고 개정된 수칙은 7일 이내에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 16 조 (기타)

본 수칙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생활관 실무위원회에서 가진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